

-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 가.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 다.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하며,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75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면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0년 6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휴업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5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다.